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0가단504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정○○
부천시
피 고 정◆◆
화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10. 12. 2.
판 결 선 고 2011.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XX동 산 X-1 임야 6,942㎡ 중 6942분의 476.8
지분에 관하여 199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정★★과 피고는 1996. 12. 20. 갑 제1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망 정★★에게 청주시 흥덕구 XX동 산 X-1 입야 6,942㎡의 피고 지분인 6942분의 1436 지분 중 476.8㎡(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중 476.8㎡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목적물은 위 산 X-1 입야 중 6942분의 476.8 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00만 원(일서불)에 매도한다는 것이다.

망 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97카단61XX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997. 4. 23.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97XX호로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8.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망 정★★은 2006. 6.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김△△, 자녀인 원고, 정△△, 정ㅎㅎ, 정◎◎이 있다. 상속인들은 2010.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정★★의 권리를 원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정★★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정★★이 피고를 대리하여 청주시 흥덕구 XX동 산 X-1 임야 6,942㎡ 중 6942분의 1436 지분을 1,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위 부동산을 5,000만 원에 매도하게 되는 경우 망 정★★에게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매매계약을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5,000만 원에 매도하면 망 정★★에게 사례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 지분을 5,000만 원에 매도하지 않는 한 사례비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 661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갑 제1호증은 피고가 망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이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기재내용과 달리 피고 주장의 목적을 위하여 갑 제1호증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따라, 피고는 망 정★★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계약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매매계약일부터 10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다면서 가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1996. 12. 20.임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0. 1. 21. 이 사건 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2010. 10. 29.자)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망 정★★은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가처분취소신청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지되었는바, 이 사건 가처분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처분결정일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

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가 중단된 경우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 178조 제1항).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처분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가처분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은 피고의 가처분취소청구로 취소될 때까지 그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가처분 결정일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_____